

고 발 장

고 발 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 계 현 (사무총장)

윤 순 철 (사무처장)

남 은 경 (사회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회관

피고발인 : 박 근 혜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최 순 실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김 기 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소지 불명

김 상 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주소지 불명

김 영 재 (김영재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9 김영재의원

서 창 석 (서울대학교 병원 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병원

이 선 우 (청와대 의무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차 광 열 (차병원그룹 회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차바이오컴플렉스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피고발인 최순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김기춘에 대하여 사후수뢰, 피고발인 김상만에 대하여 의료법 및 보안업무규정 위반, 피고발인 김영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피고발인 서창석 및 이진우에 대하여 직무유기죄, 피고발인 차광열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이들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고발인들의 지위

고발인들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홍보선전, 시민고발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활동가들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재 피고발인 최순실, 김기춘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 에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최순실은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자로서,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자입니다.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자입니다.

피고발인 김영재는 현재 김영재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인 2013. 10.경부터 2016. 8.까지 최순실을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진료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직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김상만은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서, 차음병원에서 근무하던 2010년경부터 2014년 2월까지 최순실, 최순득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 진료하였을 뿐 아니라, 녹십자아이메드로 근무지를 이전한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서창석은 현 서울대병원장으로,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 주치의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김영재, 김상만이 청와대 의료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방임한 자입니다.

피고발인 이선우는 현재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김영재, 김상만이 청와대 의료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도록 방임한 자입니다.

피고발인 차광열은 차병원그룹의 모재단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의 대표로서 그 소속병원인 차음병원의 김상만을 통하여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진료하고 그 대가로서 각종 의료정책관련 특혜를 받은 자입니다.

2. 사건 경위

가. 보건복지부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JTBC, 문화일보 보도 등을 통하여 전 차음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최순실 진료기록부	최순득 진료기록부
- 2011. 1.11. : 상담(박대표)	- 2011. 1.21. : 박대표
- 2012. 3.29. : 박대표	- 2012.11.16. : 대표
- 2012. 4. 4. : 대표님 처방	- 2012.11.29. : 박대표
- 2012. 5. 4. : 대표님	- 2013. 2. 7. : 대표님
- 2012. 8.24. : 대표님	- 2013. 3.25. : 청
- 2012. 9.19. : 대표님 주사	- 2013. 4.24. : 청
- 2013. 8.29. : 안가(결사)	- 2013. 7.25. : 청
- 2013. 9. 2. : 안가(결사)	- 2013. 9.12. : 청, 안가
- 2013. 9. 4. : 러시아출장(안가)	- 2013. 9.26. : 안가
- 2014. 6.2. : VIP	- 2013.10.28. : 안가(처방냈다가 취소)
- 2014. 8.27. : VIP고객 대신오실	- 2013.11.15. : 안가
- 2014.10. 6. : VIP	- 2013.12. 4. : 안가
- 2014.10.20. : VIP	- 2013.12.11. : 안가
	- 2013.12.27. : 안가
	- 2014. 1. 3 : 안가
	- 2014. 3.17 : 안가

20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박근혜 당시 의원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 2.경까지 최순실 담당 의사인 김상만이 최순실, 최순득의 이름으로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주사제를 7차례 처방하였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으로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2011. 1. 11. 및 2012년 3, 4, 5, 8, 9월 처방하였으며, 최순득의 이름으로는 2011. 1. 21. 및 2012. 11.경 두 차례, 2013. 2. 7.에 대리처방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 11. 11.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를 통하여 김영재 의원의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및 차움 의원의 최순실 씨 및 최순득 씨에 대한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 11. 15.경 김영재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조치를, 김상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대리처방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상만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처분(2개월 15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움병원에 대하여는 피트니스센터 가입 회원에게 진료비 할인 제공 여부, 미회원 진료거부 등 ‘환자 유인행위’를 비롯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 수사 확대의 필요성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에 위반하여 가명 진료를 하였고, 2014. 4. 16. 세월호 사고 당일 김영재가 프로포폴을 처방한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김상만이 차움병원에서

현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최순дук, 장시호 등을 통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한 의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법한 진료 제공의 대가로 차음병원이 속한 성광의료재단은 의료 규제완화 및 지원 특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① 박근혜에 대하여, 차음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② 최순실에 대하여, 차음병원 등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 ③ 김기춘에 대하여, 비서실장 재직 시절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후 그 대가로서 일본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혐의, ④ 김상만에 대하여 차음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녹십자아이메드 병원으로 이전 후의 진료기록까지 포함하여 대리처방 수사범위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 유출 혐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 줄기세포 치료 혐의, 최순실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혐의, ⑤ 김영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불법진료를 통하여 가족기업인 존재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박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번이나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 ⑥ 서창석 및 이선우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 김영재의 이른바 비선진료를 방임한 혐의, ⑦ 차광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불법 진료 대가로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특혜를 받은 혐의에 대하여 고발함으로써 수사를 촉구합니다.

3. 피고발인의 죄책

가. 박근혜

(1) 뇌물수수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 7. 및 2013. 9.경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음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차광열이 후술하는 의료정책 관련 특혜를 목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차광열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영재로부터 차명 처방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역시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2) 수뢰후 부정처사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김상만을 비롯한 차음병원으로부터 무료로 대리처방을 받고, 취임 후에 차광열을 비롯한 성광의료재단에 대하여 의료정책 관련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수뢰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합니다.

김영재의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번이나 선정되도록 하고, 그 회사 생산 화장품을 청와대 명절 선물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김영재가 서울대학교 외래교수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 역시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합니다.

나. 최순실

최순실은 차음병원에서 2010년부터 2016. 6.경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차음병원은 개원 당시 회원가가 1인당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회원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최순실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른바 VIP 대접을 받으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순실은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 김기춘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한 달만인 2015. 3.경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일본차음병원에서 수차에 걸쳐 면역성 강화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용에 대하여 차병원 측은 진료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 근무시절 성광의료재단의 의료정책 관련 특혜에 가담한 뒤 비서실장 퇴임 후 그 대가로서 일본차음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기춘에게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김상만

- (1)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대리처방 및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위반

위와 같이 김상만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통하여 최순실과 최순득의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음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최순득과 장시호를 통해 대리처방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 작성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해당하므로, 녹십자 아이메드로 근무지를 옮긴 후의 진료기록에 대하여도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리처방 뿐만 아니라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2013. 3.부터 최순득의 이름으로 12차례 주사제를 처방하여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 7. 및 2013. 9.경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체가 2급 국가 기밀입니다. 그러나 김상만은 대통령 자문의료 위촉되기 이전에 대통령을 직접 진료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도 없이 비밀을 열람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2013. 9. 2. 김상만은 차음의원에서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의 이름으로 검사하였는바, 이는 국가 2급 비밀인 대통령 건강상태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보안업무규정 위반이며 당시 김상만은 대통령 자문의였으므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2) 의료법 위반

위와 같이 김상만이 최순실, 최순득의 이름으로 대리처방한 주사제는 상당수가 그 성분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을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한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간호기록부 기재에 있어서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 김영재

(1) 의료법 제22조 위반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에게 2013. 10. 15.경 최초 진료를 받은 후 2016. 8. 30. 최종진료를 받을 때까지 총 136회의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습니니다.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대리처방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행위입니다.

(2)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김영재는 그의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안면성형용 리프팅실을

생산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 4월 중남미, 9월 중국, 2016년 5월 프랑스 순방에 동행했으며, 화장품제조사인 존제이콥스는 프랑스 순방에 동행하였습니다. 존제이콥스는 2016년 2월경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명절선물로 납품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김영재를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영재는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 기준에도 미달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재의 가족기업이 청와대와 관련한 특혜를 받고, 교수임용 과정에서도 자격기준에 미달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용된 것은 김영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리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진료를 하는 등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프로포폴 투약 등의 진료행위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익을 제공한 김영재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바. 서창석 및 이선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직무수행의 거부는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

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직무유기는 단순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진 정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306 판결 참조).

그리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참조).

서창석은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대통령 주치의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2주에 한 번씩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고,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주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자문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선우는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 재직하였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 24시간 청와대에 상주하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서창석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이선우는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로 김영재, 김상만이 대통령에 대한 차명진료, 대리진료를 하는 과정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대통령 주치의, 청와대 의무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습니다.

사. 차광열

(1) 성광의료재단 관련 특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학교법인 성광학원’,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과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99.9%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에이치그린’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차바이오텍’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각종 의료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체대혈 보관사업)은 CGM제약,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차케어스, 차백신연구소, 서울씨알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당시 투자활성화 대책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해당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차병원그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대표적으로 차움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문을 연 차움은 병원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이 병원운영을 하고, 프리미엄 건강관리(뷰티·헬스등)는 차바이오텍(당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통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차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차바이오텍 또는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정부의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방침은 차병원그룹에 직접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 방침이후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2016년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조건부 허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추진 계획으로 알츠하이머 질환 의약품에 조건부 허가제 허용하는 규제완화방안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차바이오텍은 2016. 8.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착수 발표하였습니다.

③ 2016년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을 완화하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7월 차병원에 체세포 복제 배양 연구 조건부 승인.

④ 2016년 4월 27일, 분당 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수행기관으로 선정. 8년간 19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됨.

⑤ 1,500억원 규모 의료산업 펀드인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영사, 차병원 계열사 선정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⑥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제대혈 공공관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병원을 기증제대혈 은행으로 지정되는 등 수혜

⑦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정에서 수혜
보건복지부가 대체기술 없는 질환 치료 명분으로 효과성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최종 인정 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면서, 9개 규제

완화 기술 중 혈장치료술 시행기관으로 서울성모, 삼성서울, 조선대, 강남성심과 함께 분당차병원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차병원그룹 계열의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받음.
- 2016년 5월, 9월 박근혜대통령의 이란과 중국 방문 때 차병원 경제사절단 동행
- 2016년 4월 21일, 청와대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기술자문회’주재. 청와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결정

(2) 뇌물공여죄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김상만의 불법적인 대리진료, 최순실에 대한 줄기세포주사 등을 이익으로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1)항에서 적시한 각종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음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하여 요금을 수납하지 않았다는 차음병원 전 직원의 증언 등이 있는 바, 의료제공의 대가로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서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대리처방하여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발인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인 최순실, 김기춘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모두 무시한 채 취임 이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거대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와 줄기세포 치료를 비롯한 각종 의료정책을 농간 해온 사건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용시술 및 노화방지 시술을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 이해관계인의 취향에 맞게 재단하고, 농간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1.

위 고발인

고 계 현

윤 순 철

남 은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참 고 자 료

JTBC, 2016.11.09., “”주사제를 대신”...대통령 주치의 놔두고 최순실이 왜?”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2587)

JTBC, 2016.11.10., “최순실 일가 다닌 또다른 병원...현 정부서 두각”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2846)

JTBC, 2016.11.15.,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차움 VIP 시설 이용도”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6792)

윤소하 의원, 2016.11.16., “차병원 그룹 의료영리화 혜택 보고서”
(http://yunsoha.kr/xe/act_03/1905)

한국일보, 2016.11.16., “대통령 길라임 가명 썼지만 취임 이후엔 방문한 적 없다” 기사
(<http://hankookilbo.com/v/ae9e90fd182a4786b48652eeb3223f60>)

뉴스1, 2016.11.16., “커지는 최순실 병원의혹...檢 어디까지 밝힐까” 기사
(<http://news1.kr/articles/?2832258>)

JTBC, 2016.11.22., “대통령 취임 뒤에도 기록된 차움의 '길라임 차트'”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1896)

JTBC, 2016.11.22., “차움 전 의사, 2014년에도 '청와대 진료' 정황”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1358)

문화일보, 2016.11.23., “차움 ‘묻지마 처방’? ... 주사제 성분 기록 누락”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12301070821080001>)

노컷뉴스, 2016.11.23., “檢, ‘비선진료’ 본격 수사…‘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689416>)

메디파나뉴스, 2016.11.23., “김영재 원장,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 ‘위법’” 기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678&MainKind=A
&NewsKind=5&vCount=12&vKind=1](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6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프레시안, 2016.11.24., “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회춘’을 꿈꿨다” 칼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847&ref=nav_search)

한겨레. 2016.11.25., “대통령이 사랑한 비급여 주사서비스 ”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2044.html>)

한국일보. 2016.11.27.,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깊어지는 의료농단 의혹”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7ac7e54f18df4423a5d1fc61a42d39f7>)

채널A, 2016.11.28., “‘세월호 7시간’엔 입 다문 의무실장…왜?” 보도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8/81566470/1>)

채널A, 2016.11.29., “ ‘세월호 7시간’ 때 간호장교 2명 있었다” 보도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9/81569613/1>)